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서

(매담대 판매기업/e-안심팩토링 판매기업/ 동반성장론 1차협력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수금과 관련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1차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구매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②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직접받는 판매기업(1차협력기업)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하여 1차이하 협력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받는 2~4차 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③ “전자방식” 또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MP, 기업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채널을 통하여 채권의 발행, 결제, 조회 및 대출 취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은행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MP(Market Place)”라 함은 동반성장론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 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입금계좌 지정)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의 만기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 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제3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

- ①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는 구매기업이 입금한 결제대금으로 협력기업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결제대금이 당일 결제할 외상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모든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분을 우선 상환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구매기업과 은행이 업무협약서에 약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하거나 구매기업의 지시를 받아 처리합니다.
- ② 받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는 구매기업이 해당 채권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 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정보제공의 동의)

- ①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에게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약정정보, 외상매출채권 수취 내역 등을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② 동반성장론의 경우에는 MP사에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제5조 (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약정의 효력 및 자동해지)

- ① 이 약정,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 ③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해지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의 만기일까지는 이 약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 ④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자로 이 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본인

(인)

